

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제출자 : 서구청장
- 검토일자 : 2020. 11. 18.

2. 근거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0조, 제62조 제65조

3. 주요내용

-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 변경(안 제4조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8조)
-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, 별지 7호 서식)
- 지역자율방재단 출입증 서식 변경(별지 제6호 서식)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, 「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